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

남양주시에서 발주 및 인허가 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 남 양 주 시 장

1. 근거법령

- 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- 나.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
- 다.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7호)
- 2. 공고명: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
- 3. 안전점검 수행 대상: 「건설기술진흥법」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

4. 참가자격(모두 해당)

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
 - ※ 안전진단전문기관(건축)[업종코드(1397)]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(종합) [업종코드(4963)] 등록 업체
- 나. 서울·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(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)

5. 금액별 지역제한 및 등록명부 작성

- 가. 소재지에 따라 A, B 2개로 나누어 등록명부 작성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 추정 가격에 따라 A, B 명부 중 하나의 등록명부에서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지정
 - A. 경기도 소재 업체(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시 적용)
 - B. 서울・경기도 소재 업체(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 적용)
 - ※ 남양주시 소재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시 A, B 2개소 명부에 중복 등록 됩니다.

6. 모집기간 및 방법

- 가. 접수기간 : 2020.11.5.(목) 09:00 ~ 2020.11.25.(수) 18:00(21일간)
- 나. 제출장소 : 남양주시청 건축과(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별관 4층)
- 다. 등록명부 홈페이지 공고 : 2020.12월 초
 - ※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라. 접수방법

- 우편접수(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바랍니다.
 -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,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방문접수(대리 접수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첨부)

마. 제출서류

-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[별지 7호 서식]
-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[별지 8호 서식]
-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.
-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.
-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(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) 각 1부.
- USB 또는 CD 1개.(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)

7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고 향후 지정결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2개사 이상 일 경우 참가 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등록명부에 작성하며,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시행합니다.
- 다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명부 홈페이지 공고일 로부터 1년간입니다.
- 라. 등록명부는 남양주시 인허가부서 및 사업(담당)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시 활용·적용됩니다.
- 마. 향후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건축과(☎031-590-39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